



효석문화마을내 시설 및 부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

제출자 : 평창군수

효석문화마을내 시설 및 부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9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2017. 12. .
제 출 자 평 창 군 수

□ 제안이유

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효석문화마을내 시설 및 부지관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평창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□ 위탁목적

- 2017.12.31일자로 『효석문화마을내 시설 및 부지관리』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심의·선정하여 종합관광안내소와 관광시설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고자 함

□ 추진개요

- 재산소재 : 봉평면 원길리 764-1번지 일원
- 위탁대상 : 건물 4동 680,57㎡, 부지면적 11,075㎡
- 위탁기간 : '18. 1. 1. ~ '20. 12. 31.(3년)
- 위탁료('18년) : 100백만원
- 수탁자 선정 : 공개모집
- 추진절차

- ① (추진계획수립 및 방침결정) 수탁자 선정기준, 위탁료 등
- ② (군 의회 동의) 민간위탁 사무
- ③ (적격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) 평창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
- ④ (수탁기관 선정) 적격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,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결정
- ⑤ (위탁협약 체결) 연간비용 지급단가 결정, 협약서 작성, 위탁기간 3년 이내
 - * 위탁내용, 위탁기간, 위탁료에 관한 사항, 수탁자의 의무, 계약내용 위반시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.
- ⑥ (공증) 협약내용
- ⑦ (사무 및 시설 인수·인계) 인수·인계서 작성, 사후 지도·감독

□ 민간위탁 추진상황

위탁기간	수탁기관	위탁비(천원)	비고
2011.6.1 ~ 2011.12.31	(사)이효석문학선양회	34,800	
2012.1.1 ~ 2012.12.31		62,563	
2013.1.1 ~ 2014.12.31		64,000	
2015.1.1 ~ 2017.12.31		'15년 68,000 '16,'17년 78,000	

□ 향후계획

-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: '17. 11.
- 군 의회 동의(민간위탁 사무) : '17. 12.

- * (법적근거)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
- * (조례내용/ 제3항)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.

-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: '17. 12.

- * (공고방법) 평창군 홈페이지에 공고
 - 1차 공고시 대상이 없거나 신청자가 1인 경우 재공고
- * (신청자격) 공고일 현재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
- 평창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: '17. 12.

- * (법적근거)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7조(구성)
- * (위원구성) 6명(공무원 4, 민간인 2), 위촉직
- * (심의사항)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·선정

-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 및 선정 : '17. 12..
- 심사결과 보고 및 수탁자 선정 개별 통보 : '17. 12.
- 위탁 협약체결 및 인수·인계 : '17. 12.
- 협약내용 공증 : '18. 1.

- 붙임 1. 효석문화마을내 시설 및 부지 현황 1부.
 2. 민간위탁료 산정내역 1부.
 3. 관계법령 발췌서 1부.

【붙임 1】

효석문화마을내 시설 및 부지현황

□ 총괄

주소	지번	지목	면적(m ²)	시설면적(m ²)	주요시설	관리부서
계			11,075	680.57		
봉평면 원길리	764-1	대	769	292.34	관광안내소 2동	문화관광
	262-3	대	79		주차장	문화관광
	262-9	주차장	422		주차장	문화관광
	763-2	답	449	49.56	물레방앗간	문화관광
봉평면 창동리	411	답	304	285.06	효석문화제축제장 가설시설 14개	문화관광
	410-2	답	1,602			
	410-3	답	329			
	410	답	2,889			
	408-1	종교	4,232	충주집: 32.58 화장실: 21.13	가산공원, 충주집, 화장실	봉평면

□ 세부내역

1. 종합관광안내소

- 위치 : 봉평면 원길리 764-1외 2필지
- 규모 : 건물 292.34m², 부지면적 1,270m²,

시설명	구분	면적(m ²)	주요시설
종합관광 안내소	1동	182.24	사무실, 화장실, 장비실, 보일러실, 창고
	2동	110.1	관광안내소, 휴게실, 화장실

<관리부지>

토지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m ²)	소유자	비고
합계			1,270		
원길리	764-1	대	769	평창군	안내소
	262-3	대	79	평창군	주차장
	262-9	주차장	422	평창군	주차장

2. 물레방앗간

○ 위치 : 봉평면 원길리 763-2

시설명	면적	주요시설	비고
물레방앗간		목조건물 1동, 물레방아	

<관리부지>

토지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	소유자	비고
원길리	763-2	답	449	평창군	물레방앗간

3. 가산효석공원

○ 위치 : 봉평면 창동리 408-1

○ 규모 : 공원 4,232m²

토지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	소유자	비고
창동리	408-1	종교용지	4,232	평창군	동상,수목등

4. 효석문화제 주행사장

○ 위치 : 봉평면 창동리 410번지 일원

○ 규모 : 14개 가건축물

구분	면적	주요시설	비고
공연무대	16.85	가설건축물(1개)	
먹거리촌	241.21	가설건축물(10개)	
농특산물 판매	27	가설건축물(3개)	
층주집	32.58	가산공원내	
화장실	21.13	가산공원내	

<관리부지>

토지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	소유자	비고
창동리	410	답	2,889	평창군	
	410-2	답	1,602	평창군	
	410-3	답	329	평창군	
	411	답	304	평창군	

【붙임 2】

민간위탁료 산정내역

구분	지출항목	'17예산	'18예산	증감	비 고
총 계		78,000	100,000	22,000	
인 력 관리비	소 계	58,740	71,000	12,260	
	직원급여1	16,200	19,000		'18년 인건비인상 고려
	직원급여2	15,800	18,500		
	시설관리인력	15,000	17,500		
	4대보험	6,800	8,000		
	퇴직적립금	4,100	6,000		
	기간제인력	840	2,000		잡초제거, 시설정비 등
사 무 관리비	소 계	4,060	5,500	1,440	
	일반수용비	3,060	4,500		소모품 및 집기류 구입
	정수기임대	1,000	1,000		
공 공 운영비	소 계	11,000	16,500	5,500	
	각종공과금	3,000	5,500		전기,상수도,통신요금등
	경비용역	2,700	3,000		
	우편물발송비	5,300	8,000		관광홍보물 발송
시설장비 유지비	소 계	4,200	7,000	2,800	
	시설유지비	4,200	7,000		안내소 및 시설유지보수

관계법령 발췌서

① 지방자치법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·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기관위임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수 있다.

③ 평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

제11조(관광사무의 위탁) ①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,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, 단체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관광안내소 운영